

 관 세 청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customs.go.kr http://www.motie.go.kr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2022년 1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 27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22. 1. 27.(목) 09:00	담당부서	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
담당과장	정기섭 과장(042-481-7830) 김호성 과장(044-203-5140)	담 당 자	김인순 사무관(042-481-7841) 박정민 사무관(044-203-5146)

관세청-산업부,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- 삼상유도전동기,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-

- 관세청(청장 임재현)과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'산업부')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.
- 삼상유도전동기는 팬·펌프·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
-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*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.
- *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%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%가 삼상유도전동기임
-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'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*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.
- *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(한국에너지공단)가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·품질 등을 검사

- '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, 적발률은 약 13%로,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·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, 라벨미부착 등이었다.
- 또한,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.15일부터 12.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(적발률 약 43%)을 적발하였다.
-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.
-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“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,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”을 당부했고,
-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“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박정민 사무관(☎044-203-5146), 관세청 김인순 사무관(☎042-482-78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

□ 전동기 정의

- 전기 에너지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장치, 즉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

*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

□ 수입요건 확인 대상 전동기

- (적용대상)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(수입)

*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능형유도전동기로서 0.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산업부고시)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 I, II에 해당하는 것

- (확인내용) 세관 및 산업부(한국에너지공단) 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

<수입전동기 물품검사시 확인사항>

구 분	확인사항	세부내용
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	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	품목, 모델명, 용량, 수량, 제조업체명, 제조국명 등
	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	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, 효율신고 여부, 명판 기재사항 등
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	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	품목, 용량(0.75kW미만)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

<전동기 및 명판 사진 예시>



참고2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인천세관 시범운영 결과

□ 시범운영 결과

- 에너지효율기자재(삼상유도전동기) 대상으로 42건 검사하여 효율 관리기자재 수입요건 미구비 등 18건(146점) 적발(적발률 42.8%)

< 삼상유도전동기 인천세관 시범운영 결과 >

[단위 : 건(비중(%))]

효율 미신고*	표시사항 위반**	이상없음	합계
8(19%)	10(24%)	24(57%)	42

* 효율 미신고: 효율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물품과 현품의 용량·사양이 다른 것

** 라벨 미부착: 효율신고를 하였으나 삼상유도전동기 효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것

□ 시범운영 기간 주요 적발 사례

적발사례	효율신고 정보	물품검사 현장사진
<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> 효율신고된 정보와 다른 저효율 전동기 통관의뢰		
<효율 미신고> 업체가 수입·효율 신고한 전동기와 다른 효율 미신고 전동기를 통관의뢰		
<비대상 전동기로 수입신고> 적용제외 대상 전동기로 수입신고하였으나, 검사 결과 적용대상 전동기로 확인		